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
참여연대 귀하
110-043

서울고등검찰청

2015. 3. 12.

수 신 참여연대 귀하 발 신 서울고등검찰청

제 목 **항고사건처분통지** 검 사 최 용 석

곽상도 외 3명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.

처 분	사 건 번 호	2014 고불항 제 6845 호
	년 월 일	2015. 3. 12.
	결 과	결정주문 : 항고기각 이 유 :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,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비 고

항고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